

영등포구의회
제20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7. 9. 1.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崔 光 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51호로 2017년 8월 2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우리 구 자치법규의 입법과정 및 내용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행정절차법」과 일치하지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입법예고 예외사유를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일치하도록 정비(안 제5조)
- 나. 공청회 개최시 당사자 등에게 통지할 사항을 「행정절차법」 제38조와 일치하도록 정비(안 제10조)
-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2조제1호, 안 제4조, 안 제7조제1항, 안 제11조,
안 제13조제6항, 안 제14조제2항, 안 제1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과 일치하지 않는 조문일부를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5조에서 입법예고 예외사유를, 행정상 입법예고 인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으며,
 - 안 제10조에서 공청회 개최 시 당사자 등에게 통지할 사항을 「행정절차법」 제38조(공청회 개최의 알림)와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음.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자치법규의 입법과정 및 내용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참 고 자 료

1 행정절차법

제38조(공청회 개최의 알림)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 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7.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